

조제분유 수출유망국 법적규격 조사

□ 사우디아라비아

- **(생산기준)** 걸프협력기구 내 표준화기구(GSO)의 규정에 따라 공통된 생산기준 적용
 - 조제분유 생산과 관련하여 모든 걸프협력기구 회원국은 「CODEX 72/2011: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를 기초로 하는 공통된 생산기준을 적용함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식품위생 일반원칙과 함께 유제품 및 조제분유의 위생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라벨링)** 조제분유 라벨링은 「GSO 2106 /2013 (E) Infants Formula」을 적용함
 - 조제분유는 일반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¹⁾, 유통기한 규정²⁾,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영양 성분 라벨링 규정³⁾,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특정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함
- **(포장)** GCC 포장규격⁴⁾과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기본 포장규격을 적용
 - 수입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포장재에 대한 실험실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laboratory test)를 제출해야 함
 - 조제분유는 제품이 판매되기까지 발생가능한 모든 환경 하에서 내용물의 부패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함
- **(인증정보)** 할랄인증이 필수는 아님
 - 조제분유는 할랄인증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적음
 - 사우디에서 할랄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분유 브랜드인 난(Nan)과 니도(Nido)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에도 할랄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수입규제)** 위생증명서, 수의학증명서 제출 필수
 - 조제분유 수입 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2부와 수의학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식품무역 사업자로 등록된 수입업자가 제품등록을 진행하는데, 수입업자의 상업등기에 식품 무역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캄보디아

- **(생산기준)** CODEX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은 시장 내 유통 가능
 - 「Sub-Decree No. 133 on the Marketing of Infant and Child Feeding Products」에서는 조제분유를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standard)에 따라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
 - 별도의 영양기준을 설정하지 않아도 CODEX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일 경우 시장 내 유통이 가능함

1) 「GSO 9: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

2) 「GSO 150: Expiration Periods of food products」

3) 「GSO/CAC/GL 2: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4) GSO 839: Food Packages- Part1. General Requirements, 「Food packages - Part 2: Plastic Package - General Requirements」

- 조제분유의 CODEX 기준⁵⁾에서는 조제분유 및 영유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영양소 함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라벨링)** 일반식품 라벨링 규정 및 어린이 식품규정 적용
 - 일반식품의 라벨링은 「Prakas No. 1045 ISC CS001-2000: Labeling of Food Product」 규정에 따라야 함
 - 어린이용 식품규정⁶⁾내 조제분유 라벨링 유의사항 참고
- **(포장)** 구체적인 식품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식품에 사용가능한 포장 재료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제분유 포장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음
- **(인증정보)** 식품 부문에서는 칠리소스와 식초에 대한 생산기준을 마련하여 인증마크를 발급하며, 조제분유에 대한 인증은 미비함
- **(수입규제)** 조제분유는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입 전 위생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 조제분유를 포함한 모든 식품은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 전 식품의약품부 산하의 식품안전국(FSB, Food Safety Bureau)에서 위생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 식품은 도착 전 검사(Pre-Arrival Assessment) 대상으로 조제분유도 이에 해당되며, 상무부(MoC) 산하의 수출입물품 검사기관인 캄컨트롤(Camcontrol)이 도착 전 평가를 담당함

□ 말레이시아

- **(생산기준)** 조제분유 생산규격은 식품규정 「Food Regulations 1985」를 적용
 - 식품규정 제8조 ‘식품별 기준 및 특정라벨링 요구사항’에 따르면, 조제분유는 특수목적용 식품(Special Purpose Food)으로 분류되어 감독청(Director)의 서면승인 없이 수입, 제조, 홍보, 판매가 금지됨
- **(라벨링)** 조제분유는 특수 라벨링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 라벨링 규정은 「Food Regulations 1985 - PARTIV Labelling」에 명시되어 있음
 - 조제분유의 경우 일반식품 라벨링 규정에 준하는데, 적용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특수 라벨링 규정을 우선으로 함
- **(포장)** 포장 규정은 「Food Regulations 1985 - PARTVI Packages for Foods」에 명시
 - 조제분유는 특수목적 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 포장재의 금속오염물질 최대 허용치가 규정되어 있음
 - 소매점 판매 물품의 경우 포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됨
- **(인증정보)** 조제분유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공인하는 자킴(JAKIM) 할랄인증이 필수는 아님
 -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판매 중인 주요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네슬레, 듀팩스, 미드존슨 등)의 제품은 모두 할랄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5) 「CODEX STAN 72: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6) 「Sub-Decree No. 133 on the Marketing of Infant and Child Feeding Products」

- **(수입규제)** 조제분유는 「동물법 1962의 규칙 제8조(Section 8 of Animal Rules 1962)」에 의해 우유 및 유제품에 해당되는 수입규정을 적용
 - 유제품은 수의국(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의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수입이 허가되는 조건부 수입 대상에 해당
 - 수입신고 및 관련서류 제출과는 별도로, 식품 수출업체는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말레이시아로 반입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에 수출업체로 등록해야 함

□ 필리핀

- **(생산기준)** CODEX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이면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함
 - 조제분유의 생산·판매·유통에 있어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standard)에서 권고한 생산기준과 「Codex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Foods for Infants and Children」을 적용
 - 식품별, 첨가물별 함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필리핀 식약청이 규정한 「Bureau Circular No.2006-016」에 조제분유에 사용가능한 첨가물과 최대 함유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Bureau Circular No. 01-A s. 2004」에 조제분유에 대한 미생물 함유치가 제시되어 있음
- **(라벨링)**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특정 라벨링 규정⁷⁾에 따름
 - 조제분유에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개별 용기에 인쇄되거나 라벨로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부착의 경우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함
 - 필리핀 보건부 규정인 「Department Circular No.2008-0006」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제분유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필리핀 식약청의 영유아 식품 유통기한 가이드라인⁸⁾에 따르면, 조제분유의 유통기한(Best before)을 라벨·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포장)** 조제분유 포장규정 미비
 - 조제분유 관련규정을 명시한 「Executive Order NO. 51」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법·식품첨가물법 등에도 식품포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그러나 2013년 제정된 식품안전법⁹⁾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소비자 보호 등) CODEX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분유를 포함한 전 식품군에 사용되는 포장은 CODEX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정보)** 식품인증 미비
 - 일부 식품의 경우 필리핀 국가표준(PNS, Philippine National Standards)이 마련되었으나 식품은 필수인증 품목군이 아니며 표준이 마련된 식품의 종류도 제한적임
- **(수입규제)** 조제분유는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됨

7) 「Executive Order NO. 51」

8) 「FDA REGULATION No. 001-C s. 1982」

9) 「REPUBLIC ACT NO. 10611(Food Safety Act of 2013)」

-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업면허(license to operate, LTO)와 제품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가 필요함¹⁰⁾
-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수입을 위한 LTO를 취득해야하며, 수입 전 제품등록(Product Registration)을 반드시 진행하여 제품등록증명서(CPR)를 발급받아야 함
- 조제분유는 일반적인 식품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진행되며,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수출국가의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수입 시 제출해야 함

□ 홍콩

- **(생산기준)** 식품안전규정¹¹⁾ 파트 4(Part IV)에 명시된 CODEX 기준을 반영한 영양소 기준 준수가 요구됨
 - 2015년 12월부터 발효된 홍콩의 식품안전규정에 유아용 조제분유에 관한 상세 규정이 추가됨
- **(라벨링)**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및 조제분유 영양표시 규정 적용
 -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은 「Schedule 3 to the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 (Cap. 132W)」을 준수해야 함
 - 식품안전규정¹²⁾의 「Schedule 6A: Nutrition Labelling of Infant Formulae」에 조제분유의 영양표시 라벨링 규정이 있음
- **(포장)** 조제분유 포장재의 규격에 관한 규정 미비
 - 조제분유 별도의 포장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식품안전규정¹³⁾ 내 조제분유의 라벨링 규정에는 포장과 관련해 ‘모든 조제분유는 250cm² 이하의 용기에 포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인증정보)** 조제분유 및 수입식품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은 없음
- **(수입규제)** 조제분유의 수입과 관련한 규정 미비
 - 가루분유(Powdered Formula)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규정의 명칭과 달리 수출통제가 주된 내용이며, 조제분유의 수입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음

10) 「Administrative Order No.2014-0029」

11)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Amendment) (No. 2) Regulation 2014」

12)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Amendment) (No. 2) Regulation 2014」

13)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Amendment) (No. 2) Regulation 2014」